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. 6. 23 선고 2019가단115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]

전 문

원고A대중중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 종결2020. 5. 19.

판결 선고2020. 6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J 임야 11,812㎡ 중 별지1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및 경남 합천군 K 답 420㎡ 중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9. 10. 1., 피고 C은 2019. 12. 18., 피고 D는 2020. 3. 5., 피고 E, H, I은 각 2019. 9. 17., 피고 F은 2019. 9. 18., 피고 G은 2019. 10. 18.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- 피고 D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-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정지원

별지